

제294회 미추홀구의회 (임시회)  
2026.3.17.(화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황숙경 의원 대표 발의】



의회운영위원회  
[전문위원 오세진]

#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검토경위

○ 발 의 자: 황숙경 의원 외 4명

※ (공동발의자) 김재원, 김태계, 양정희, 정락재 의원

○ 발의일자: 2026. 3. 10.

○ 심사일자: 2026. 3. 17.

## 2. 제안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○ 공무원 여비(운임 및 숙박비) 지급 기준 변경(안 제4조)

- 공무원 여비 규정 변경 사항 반영

○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불분명한 현행 조항 삭제(안 제5조제3항)

## 4. 관련법령 등

○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2025.12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부정 수령에 대한 징벌적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  - 여비 지급의 경우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데, 상위 규정 변경 시 조례를 수정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상위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입법 효율성을 높였으며,
  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은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“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”, “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”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- 따라서, 상위 기관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